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필방문요양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이하 ‘서비스’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장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1.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 등급외는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보호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이용자(보호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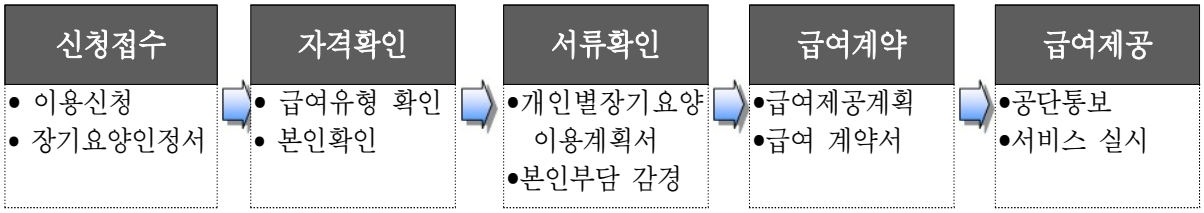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⑦ 이용료(본인부담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보호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4.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5.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의무
6. 장기요양급여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의무
7.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8.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그 외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등이 변경되었을 때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1. 센터는 매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이용자(보호자)가 센터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서비스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급여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자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 씻기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신

2)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②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2)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3)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 이용자(보호자)가 요청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6. 이용자 또는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 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용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②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④ 그 외 요양보호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

제2조 (서비스 비용)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보호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이용자(보호자)는 이용자(보호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③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1. 센터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와 요양요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3. 센터는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급여비용 (26년도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